

부속서 III
수량규제
(제11장)

부속서 III

1. 인 수량제한을 규정한다.
2. 각 포함내용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수량제한이 유지되는 일반분야를 말한다.
 - 나. **하위분야**는 수량제한이 유지되는 특정분야를 말한다.
 - 다. **산업분류**는 적용 가능한 경우 유엔상품분류나 국내산업분류표에 따른 유보에 의해 포함되는 행위를 말한다. 유엔 상품분류는 예시적인 규정이다.
 - 라. **현행조치**는 수량제한이 유지되는 조치를 지칭한다.
 - 마. **유보내용**은 수량제한이 적용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의 범위를 규정한다.

부속서 III 칠레의 유보리스트

- 분야: 통신
- 하위분야: 우편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511 우편서비스
- 현행조치: 교통통신부법률 제10호(1982.1.30자 관보)
- 유보내용: 칠레의 국내법에 따라 칠레우체국은 우정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국내 및 국제 우편업무의 요금과 배달을 관장한다.

- 분야: 통신
- 하위분야: 무선통신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52 전기통신 서비스
- 협행조치: 법률 제18168호(1982.10.2자 관보)
- 유보내용: 법령 또는 전기통신담당 차관의 허가에 의해서만 전기통신 서비스의 설치, 운영 및 사용이 가능하다. 무선통신 시스템의 사용은 가용한 주파수와 관련정책에 따라 허가된다.

- 분야: 에너지
- 하위분야: 송전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87 배전에 부수하는 서비스
- 현행조치: 광업부 법률 제1호(1982.9.13자 관보)
법률 제18410호(1985.5.22자 관보)
공공사업부조직법(법률 제19474호, 1996.9.30자 관보)
- 유보내용: 배전 서비스 설치, 운영 및 사용은 전력 및 연료감독 기구의 조건부 허가와 경제부의 최종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조건부 허가는 최종 허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 수력발전소, 변전소 및 송전선 설치의 경우도 위의 절차에 따른다.

허가를 받지 않는 전력에너지의 송변전선과 관련된 도로, 전선과 공공재의 사용은 관할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전, 송전 및 배전은 전기연료감독국의 사전 의사소통 없이 제 공될 수 없다.

- 분야: 환경서비스
-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409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
- 현행조치: 법률 제18302호(1984.5.2자 관보)
- 유보내용: 칠레 원자력에너지위원회는 핵·방사선 설비와 공장, 기관, 실험실 또는 핵시설에서 종사하기 위하여 특별한 인가를 받는 사람의 수를 결정한다.

- 분야: 전문서비스
- 하위분야: 법률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61 법률 서비스
- 협행조치: 법원조직법
- 유보내용: 공증인, 기록보관인, 최고법원검사, 송달인, 보조판사, 부동산등록인, 상업등록인, 채광권등록인, 광산기업주주등록인, 수전등록인, 수로협회등록인, 농기계 및 가축에 대한 동산 등록인, 산업생산설비에 대한 동산등록인, 특별동산등록인의 수는 법률 및 법률에 따른 대통령 조치에 의해 결정된다.

- 분야: 통신
-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52 전기통신서비스
- 현행조치: 법률 제18,168호(1982.10.2자 관보)
- 유보내용: 해양 및 항공 전기통신의 허가, 설치, 운영, 통제는 각각 칠레 해군과 민간항공위원회가 담당한다.

- 분야: 운송
- 하위분야: 항공운송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46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
- 협행조치: 재무부 법률 제241호(1960.4.6자 관보)
- 유보내용: 민간항공위원회는 항공운송을 지원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설 뿐만 아니라 공항 및 비행장의 수량적 제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공항과 비행장 또는 다른 항공정류장 등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항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 분야: 운송
- 하위분야: 항공운송 특수항공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6753 지상 측량 항공서비스
- 협행조치: 국방부법률 제2090호(1930.9.6자 관보)
- 유보내용: 육군 지리기관과 해군 항해 및 수로국만이 국토에 대한 모든 공식 지도와 해도를 제작할 권한을 갖는다.

- 분야: 상하수서비스
-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40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위생 및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
- 현행조치: 공공사업부법률 제382호(1989.6.21 관보)
- 유보내용: 음용수의 공급과 배분을 위한 공공사업의 설치, 건설 및 탐사 업무와 하수의 수집·처리 업무는 공공사업부의 명령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며 상하수 서비스 최고감독관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한다.

부속서 III
한국의 유보리스트

- 분야: 사업서비스
- 하위분야: 엔지니어링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6729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
- 협행조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8조(법률 제6608호, 2002.1.1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조(대통령령 제17728호, 2002.9.6)
- 유보내용: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한다.
 1. 도로시설중 특수교량(현수교·사장교·아치교 및 최대경간장이 50미터이상인 교량을 말한다)과 연장 1천미터이상의 터널
 2. 철도시설중 트러스교량과 연장 1천미터이상의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하구둑과 특별시안에 있는 직할하천의 수문, 그리고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공급능력 100만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대시설

- 분야: 통신
- 하위분야: 방송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524 프로그램 전송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753 라디오 및 케이블 텔레비전 전송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6113 영상 또는 비디오 배급 서비스
- 현행조치: 방송법 제9조(법률 6139호, 2000.1.12)
- 유보내용: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한국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과 기술을 구비한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합편성 또는 뉴스보도나 상품선전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한국 영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문: 통신
- 하위부문: 방송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613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 협행조치: 방송법 제71조, 제78조(법률 6139호, 2000.1.12)
방송법시행령 제53조, 제57조(대통령령 17156호, 2001.3.20)
- 유보내용: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총 방송시간의 8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한국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을 다음의 범위 안에서 한국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1. 영화 : 총 방송시간의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이하
2. 애니메이션 : 총 방송시간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3. 대중음악 : 총 방송시간의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사업자는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총 방송시간의 50퍼센트 안에서 한국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을 다음의 범위 안에서 한국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1. 영화 : 총 방송시간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2. 애니메이션 : 총 방송시간의 4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
3. 대중음악: 총 방송시간의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법에 의하여 허가, 승인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는 외국의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국방송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의해
운용되는 채널 전체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부문: 통신
- 하위부문: 우편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511 우편서비스
- 현행조치: 우편법 제2조(법률 6196호, 2000.1.21)
- 유보내용: 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 및 국제우편 송달업무의 요금과 배달을 관장한다.

- 분야: 부동산서비스
- 하위분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한 부동산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220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한 부동산 서비스
- 현행조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법률 제6237호, 2000.1.2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제31조(대통령령 제16814호, 2000.5.1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건설교통부령 제239호, 2000.5.27)
- 유보내용: 한국에서 발급된 감정평가면허를 소지한 자가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분야: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 하위분야: 경마장 운영업(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매체를 통한 경마중계, 마권구매행위 포함)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652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시설 운영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6920 도박서비스
한국표준산업분류 88313 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88994 도박장 운영업
- 현행조치: 한국마사회법 제3조, 제48조(법률 6572호, 2001.12.31)
- 유보내용: 한국마사회는 한국에서의 마권구매행위를 포함한 경마장 운영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한다.

- 분야: 운송서비스
- 하위분야: 철도운송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11 철로에 의한 운송 서비스
- 협행조치: 철도법 제5조(법률 제5903호, 1999.2.8)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관련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6조(법률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제43조(법률 제6622호, 2002.1.19)
- 유보내용: 철도운송서비스에 대한 면허는 특히 공공복리, 국가 산업개발, 경제적 타당성 심사 등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급한다.

국유철도운송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철도청이 운영한다.

- 분야: 운송서비스
- 하위분야: 도로운송서비스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121 기타 정기여객운송
유엔상품분류 7122 기타 비정기여객운송
- 현행조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법률 제6655호, 2002.2.4)
- 유보내용: 도로 여객운송 서비스 수행을 위한 면허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할 예정인 지역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고속버스운송서비스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는 특히 경제적 수요 심사 요건에 기초하여 부여된다.

